

나.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 주요 내용

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

①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“시장질서 교란행위로” 처벌(§178조의2 ①)

i) 2차·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

※ (예시) 상장사 ○○기업 CEO인 A가 사적인 모임에서 친구 B에게 신제품 출시계획을 알려주자, 친구 B는 본인의 동생 C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, C가 동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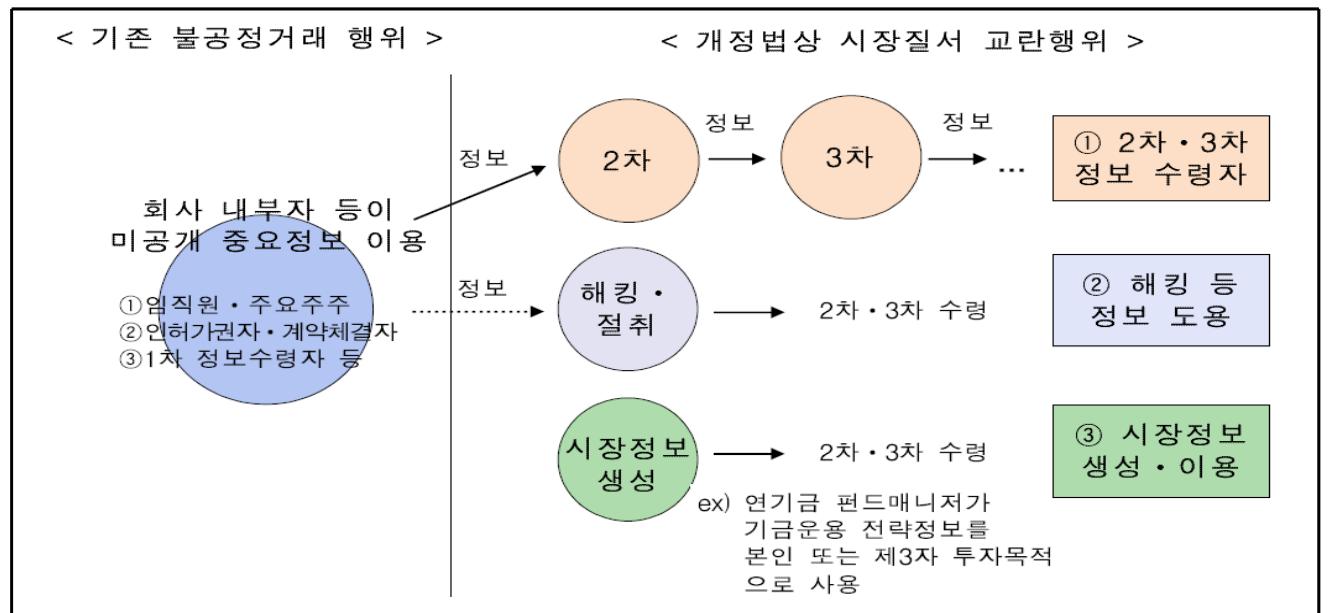
ii) 해킹·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얻거나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

※ (예시) 인쇄소에 근무하는 A가 작업 중이던 서류를 빼돌려 상장사 △△ 기업의 발표되지 않은 기업 인수·합병(M&A) 정보를 입수한 후, 동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

iii)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활용하거나 해당 시장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하여 주식거래 등을 한 경우

※ (예시) 연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B는 투자대상 종목으로 상장사 ××기업을 선택한 후 투자종목으로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친구인 C에게 전달하였고, B 또는 C가 동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

※ ii), iii)의 경우에 정보 취득 자체는 형법, 정보통신망보호법,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으며, 금번 개정 법률은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규제를 하는 것임



② “목적성이 인정”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규제(§178조의2 ②)

※ (예시) A씨는 본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상장기업 ◇◇사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매입하도록 하였으나, **실행도중 프로그램 오류**로 인해 해당 상장기업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면서 주가급변

→ 기존에는 A는 “시세조종의 목적”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벌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나, 법 개정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대상

<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>

목적성을 가지고
시세에 영향

- ① 타인이 거래상황을 오인하게 할 목적
- ② 타인을 거래에 끌어들일 목적
- ③ 시세를 고정할 목적
- ④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

< 개정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>

목적성 없이 시세에
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
ex)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
등으로 대량 매수·매도
주문이 체결되어
시세 급변을 초래하는 경우

③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

-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,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(또는 회피한 손실액)의 1.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

②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을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도모(§447조 ①, §447조의2)

- ①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 별금은 반드시 병과
- ②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

③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관련 금융당국과 사법당국간 정보교류 강화(§178조의3)

○ 증선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(과징금 대상)에 대한 조사 중 해당 사건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(형벌 대상)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 등